

현	행	개	정	안
		⑦컴퓨터 입 력자료 관리 ⑧기타 명시 되어 있지 않 은 사항은 유 사한 사항에 의한다.	1건	200원

【 8 】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26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 현재 우리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 시설인 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93년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정원이 96명인 회천읍 덕계 어린이집이 현재 신축중이며, '94년 8월말 완공되면 공립보육 시설이 5개소에 이르며 그 정원은 280여명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직영 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 시설을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권 위함.

주요골자

- 운영위탁 (안 제2조) :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 위·수탁 계약 (안 제3조) :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등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계약 체결

- 위탁기간 (안 제4조) : 2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
- 시설운영 (안 제6조) :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함
- 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 : 시설기준, 종사원 확보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
- 위탁의 취소등 (안 제9조) : 수탁자 의무 불이행시 위탁취소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군 공립 보육시설 (이하 “공립보육시설”이라 한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위탁) ①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양주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조(위·수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등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육정원 및 입·퇴소) 보육시설의 보육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17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운영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경비) 보육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원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시설 재산을 타용도에 절대사용을 금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증설, 양도, 임대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설한 시설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年に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보육시설을 수탁운영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양주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26.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80년부터 공공요금의 억제방침 및 '93년도 요금동결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수준이 원가에도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 '94년부터 '97년까지 년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재정수지의 향상을